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신	
=.	
람	



제596호 2023. 8. 31.(목)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3-1397호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3-170호 율대일반산업단지계획 정정 고시 16

호					
_ 프					
람					

발행: 고성군, 편집: 인구청년추진단(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3-1397호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환경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31.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행정사무의 시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따라 구분·통일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조금 지원 및 준용 조항 구체화 → 제18조제2항
- 나. 행정사무의 시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따라 구분 · 통일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 용어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처: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환경과
- 2) 전화: (055)670-2403, 팩스: (055)670-2409
- 다. 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환경과(전화 055-670-2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의"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화 하며"를 "생활화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견시"를 "발견 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군은"을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환경보전 기본시책"을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을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년차별"을 "연차별"로, "군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을 "고성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군은 환경기본계획"을 각각 "군수는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을 "변경 시 환경계획"으로 한다.

5.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사업시"를 "사업이"로, "강구·시행"을 "마련·시행"으로 한다.

제10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를 "법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환경위원회의 설치등)"을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환경보전시책"으로, "군환경위원회"를 "고성군 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성 및 운영등"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연환경의 보존)"을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군민·사업자는"을 "모든 군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설치등"을 "설치 등"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군은"을 각각 "군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다"를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는 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환경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 2. 민간환경단체가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 홍보 및 실천사업
- 3. 생태계 교란 동 · 식물 퇴치사업
-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21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 환경보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및 군민의 책무와 군 환경보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가능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 규정하여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로 하다.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 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군의 환경보전 제2조(기본이념) ①고성군(이하 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 '군'이라 한다)의 -----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본군의 환경발전은 인간과 자 <삭 제> 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 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 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③----- 제1항----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 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생활환경을 말한다.

- 2."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 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 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 3."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 는 환경을 말한다.
- 4."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5."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 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 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 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 한다.

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에 따른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② (생 략)

-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u>생활화 하며</u>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한다.
- 1. 환경오염행위 <u>발견시</u>에는 현 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 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 동

2. ~ 4. (생략)

제7조(환경백서) ①군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 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 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 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 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 다.

 ② (생 략)

 제2장 환경보전 기본시책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 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u>년차별</u>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u>군 환경</u> 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생활화하며</u>
1 <u>발견 시</u>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환경백서) ①고성군수(이하
<u>'군수'라 한다)는</u>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등
제8조(환경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연차별
<u>고성군</u>
환경계획(이하"환경계획"

2	환경기본	<u> </u> 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여	야 한다	구 .

- 1. ~ 4. (생략)
-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③군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 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 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군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⑤군은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 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 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환경영향검토) <u>군은</u> 군내에 저서 시행하고자 하는 <u>사업시</u>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

②환경계획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그 밖
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수는 환경계획
④군수는 환경계획
⑤ <u>군수는</u>
<u>변경 시 환경계획</u>
제9조(환경영향검토) <u>군수는</u>
<u>사업이</u>

사항

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u>강구·시행</u> 하여야 한다.	<u>마련·시행</u>
제10조(규제조치) <u>군은</u> 환경오염	제10조(규제조치) <u>군수는</u>
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	
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필	법에 따라
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u>군은</u>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u> 군수는</u>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	
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u>강구</u> 하여야 한다.	<u>마련</u>
제12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제12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u>등)</u> ①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하여 <u>군환경위원회</u> (이	고성군 환경정책
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	위원회
치할 수 있다.	<u>.</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	4
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u>환경기본계획</u> 의 수립에 관한	1. <u>환경계획</u>

2.	\sim	5.	(생	략)

- ⑤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u>「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u>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
- ⑥환경위원회의 <u>구성 및 운영등</u>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다.
- 제13조(자연환경의 보존) ①군· 건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군은 공원 및 녹지의 <u>설치등</u>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 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의 공개) ① 군은 환경 저 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 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

	2. ~ 5. (현행과 같음)
	5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u>」</u>
	⑥ <u>운영 등</u>
제	13조 <u>(자연환경의 보전)</u> ① <u>모든</u>
	군민은
	② (현행과 같음)
	③ <u>군수는</u> <u>설치 등</u>
	<u>마련</u>
제	14조(정보의 공개) ① <u>군수는</u>

	3 단 중 보 2023년 8월 31
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교육·홍보) <u>군은</u> 교	제15조(환경교육・홍보) <u>군수는</u> -
육기관, 민간단체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	
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 ① <u>군은</u>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 ① <u>군수</u>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	<u>는</u>
하여 필요한 감시 • 측정등의 체	
계를 정비하고 환경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	② <u>군수는</u>
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	
지, 자연과 환경보전, 기타 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	
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	

①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① 군수는 -----

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구우 하경 0 억 0 로 이하 피체 ()구수는 -----

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② (생략)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①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 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다.

②군은 군민·사업자등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 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 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조사 • 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또 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지원) ①군수는 ---------- 필요한 재 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사업자・민간환경단 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 보・기술・재정지원을 할 수 있 다.

-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환경 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 2. 민간환경단체가 수행하는 환 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 3.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 사업
-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활 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제2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제2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와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 의의 협력) 군수는 ------

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	
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협력강화) <u>군은</u> 외국	제21조(국제협력강화) <u>군수는</u>
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	
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	
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환경문제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	의견	ᄼᅯᅅ	수정사유	
개정만	찬성	반대	수정안		

고성군 고시 제2023-170호

율대일반산업단지계획 정정고시

고성군 고시 제2016-10호(2016.04.14)로 최종 변경 및 2016-107호(2016.07.06.)로 정정고 시한 율대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변동되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 8. 31. 고 성 군 수

- □ 율대일반산업단지 계획
- 1. 산업단지의 명칭
 - O 율대일반산업단지
- 2.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산56번지 일원

나. 면 적 : 181,593㎡

- 3.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가. 개발기간:

- 기정 : 2009년 ~ 2016. 6. 30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조서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비고
				당초	변경	PI <u>1'</u>
	계	181,593	100.0			
	산업시설용지	136,667	75.3			
	공업용지	72,833	40.1	사업시행자 귀속	사업시행자 귀속	
	물류시설용지	63,834	35.2	사업시행자 귀속	사업시행자 귀속	

공보 제596호

		면 적(m²)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3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지원시설용지	2,293	1.3	사업시행자 귀속	사업시행자 귀속	
	공공시설용지	42,633	23.4			
	저류지	3,286	1.8	사업시행자 귀속	고성군	
	전기시설	210	0.1	사업시행자 귀속	사업시행자 귀속	
	배수지	273	0.2	사업시행자 귀속	사업시행자 귀속	
	도로	13,613	7.5	고성군 귀속	고성군 귀속	
	주차장	5,176	2.8	사업시행자 귀속	사업시행자 귀속	
	완충녹지	18,909	10.4	고성군 귀속	고성군 귀속	
	공원	1,166	0.6	고성군 귀속	고성군 귀속	
	녹지용지	-	-			
	완충녹지	-	-			
	공원	-	-			

5. 정정사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인 저류지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고성군 관리로 정정

※ 정정 고시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성군 고시 제2016-52호(2016.04.14.)호 및 제 2016-107호(2016.07.06.)와 동일함